

■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[별표 1] <개정 2021. 9. 7.>

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준 (제2조제2항관련)

1. 대지면적 : 건축법·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되, 건물의 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한다

2. 사무실 면적

계 급 별	구 분	일반사무실 (제곱미터)	단독사무실 (제곱미터)	비 고
장 관 급	장관실·장관급 기관장실		165	집무실·접견실·비서실
	위원실		99	집무실·비서실
차 관 급	차관실·처의 차장실		99	집무실·비서실
	청장실		99	집무실·비서실
	차관급 기관장실		99	집무실·비서실
	위원실		66	집무실·비서실
차관보급 1 급	차관보실		50	집무실
	기획관리실장실		50	집무실
	청의 차장실		66	집무실·비서실
	기관장실		66	집무실·부속실
	위원실		33	집무실
2 · 3 급	국장실·담당관실		33	집무실
	기관장실		50	집무실·부속실
	위 원	17		집무면적
	3급과장	17		집무면적
4 급	국장·과장	17		집무면적
	서기관	7		집무면적
	기관장실		33	집무실·부속실
5 급	과 장	17		집무면적
	사무관	7		집무면적
	기관장실		17	집무실
6급 이하	과 장	10		집무면적
	일반직원	7		집무면적
	기관장	17		집무면적

비 고 : 1. 각 기준면적은 실·과의 업무 형태 및 특성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.

2. 위 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청사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

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.